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7월 26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 9.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2025. 2.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 3. 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제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선영)

현재 수산자원조성금의 징수액(2023년도 7억 3,700만원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전체 예산(2023년 기준 771억 3,200만원) 대비 약 1% 수준으로 조성금의 기여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해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고유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해 납부의무자인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업인들의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활동이나 공유수면 매립, 골재채취 등 수산자원 훼손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 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측면이 있고, 현행법에서도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제출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는 조성금을 면제하거나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융통성 있는 제도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어업행위 등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행위자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였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제도운영의 틀 안에서 어업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어종·어업·조업수역·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해 어획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한편,

제38조제2항에서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어선이 이를 초과하여 어획한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수산자원조성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조성금 징수를 배분량 초과분 공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할 경우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어업인은 초과분이 예외 없이 다음 연도 배분량에서 공제되는 규제를 받게 되므로,

아직 일부 어종·업종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시킬 예정인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실시과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금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 조정태 위원)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